원광보건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

규정	참고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원광보건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규정을 법령과 학교규칙에 위임된사항에 의해 운영됨을 나타냄
제2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제2항제1호에 의거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우호적 문화 조성을 위해 를 위해 삭제. ◦학생의 인권은 예시안에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북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등을 근거로 규정하였음. ◦조례는 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자치법규이나,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번 학생생활규정 제3조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조의 제목을 인용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2장 학생의 권리를 **제2장 권리와 책임**으로 수정
제3조(학생의 권리) 신설. 모든 학생에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3조(학생의 권리)신설하여 현 예시안 제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권리를 제3조 각호에 명시함.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함.

규정	참고사항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24. 그 밖에 보편타당한 권리	
제4조(학생의 책임)신설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구성원의 인권 존중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 할 책임 3.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 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 준수의 책임 6. 학생 서로 존중하여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 준수의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 학생이 학교 뿐만 아니라 세계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알고 의무를 져야 하는 내용은 세계인권선문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4조제3항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각 호 작성.

규정	참고사항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에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3장 학생 생활에서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로 수정.
제5조(기본행동・차림새) 1. 기본행동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ㆍ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차림새 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에게 불쾌감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② 타인을 비하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③ 학생의 용의 복장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생활규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4. 용의복장 세부규정] [별표-5. 두발 세부규정]	◦학생생활규정은 교육 과정의 하나로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치 규칙인 만큼 현행 ‘제3장 학생생활’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로 변경하고 이하 각 조항의 세부 내용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학생과 교직원간의 상호 인권존중의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항과 항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함. ◦「세계인권선언」 제29조제1항에서3항부터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4조제3항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제6조(수업 태도)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④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타인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침해 방지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의무, 책무 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의거 신설.

규정	참고사항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학생의 휴식시간 보장으로 인하여 교육활동, 생활지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황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추가함.
제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최소의 범위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④ 교사의 허락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이용과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9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제2호매체물,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제4호청소년유해약물
제10조(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규정	참고사항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혐오 표현,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제11조(소지품 검사)① 교원은 학생이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소지품검사를 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 물품을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 ◦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는 ‘합리적 의심’으로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물품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드시 비례의 원칙을(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지켜질 수 있도록 함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은 고시를 참고하여 학교 상황에 맞게 결정한다.)	

규정	참고사항
제13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에 필요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와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신설.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에 따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고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 제21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제1항 내용 명시. 이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공교육정상화법)」과 「아동법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1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규정	참고사항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학교 규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반드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재 량] 위원장은 교감(교무부장), 부위원장은 인성인권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재 량]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약간 명을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 기능: 학생 생활 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단위 학교 학생 생활 교육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은 결재·보관하며, 의결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한다.

[자료출처: 2023.학생생활교육계획(민주시민교육과)]

◦ 기존 제37조~제43조의 내용은 제21조(학생징계) 내용에 포함

규정	참고사항
제21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8일 (8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4일 (24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고등학교만 규정에 넣고, 초·중학교는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줌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함 4. 제20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항은 고등학교만 해당되며, 초·중학교는 해당없음)	◦ **기존 제41조(징계통보와 진술권보장)에 대해서는 (예정)예시안제21조(학생 징계)에 설명하여 삭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인 학칙으로 「초·중등교육법」제18조와 제20조의2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음.**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규정	참고사항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23조(학생생활규정 개정)**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광보건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24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分課) 모임 등의 회의	

규정	참고사항
3. 교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24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4. 3. 02.>

이 규정은 2024년 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광보건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1. 금지물품 처리 세부규정]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2조 관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 사용을 금지한 물품

[제12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은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보관 방법을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참고사항
■ 원광보건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2. 학생분리 세부규정]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6조 관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규정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뒷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상담실-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과 담당 교무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상담실-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참고사항

규정

■ 원광보건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3. 기본생활 세부규정]

구분	항	내 용	위반 횟수에 따른 징계					누적 (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예절	1	등,하교시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학교 생활중 체육복 및 생활복 착용하지 않은 학생	●	●				1
	2	눈에 띄거나 수업권을 방해할 정도의 원색 계열의 염색, 탈색, 파마, 피어싱을 한 학생	●	●				1
	3	교사에게 폭언 또는 반항하면서 지도를 거부한 학생		●	●	●	●	3
	4	예절이 불량하여 외부에서 진정 및 통보된 학생	●	●	●	●		1
준법	5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3
	6	교사의 지도 및 징계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3
	7	공공 시설물 및 집기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학생	●	●	●	●		3
	8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	●				1
	9	금품을 **절취**, 강탈, 강매, 사취한 학생	●	●	●	●	●	3
	10	음식물 무단 반입을 한 학생	●	●	●			1
	11	불량매체(서적, 인터넷, 영상물 등)를 공유하여 탐독한 학생	●	●	●	●		1
	12	보안시스템 경계 후 실내 무단 침입한 학생	●	●				1
수업	13	시·종 시간을 지키지 않는 학생	●	●				1
	14	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1
	15	수업시간에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는 학생	●	●				1
	16	수업시간에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학생	●	●				1
	17	수업시간에 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이탈하거나 타 학급을 무단출입한 학생	●	●	●			3
	18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거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	●	●	●			3
	19	학생들을 선동하여 수업을 거부하거나 집단행동을 주도한 학생			●	●	●	3
	20	고사(수행평가 포함)중 부정행위를 행하였거나 동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학생	●	●	●	●		3
	21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3
	22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 한 학생				●	●	3
근태	2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담임교사가 의뢰한 경우)	●	●	●	●	●	1
	24	미인정 결과, 지각, 조퇴, 외출하여 적발된 학생	●	●				1
약물	25	음주 및 흡연을 한 학생(술, 담배, 전자담배, 전자담배 액상, 성냥, 라이터 소지자도 동일하게 처리함) ▶ 1회-학교 내 봉사, 2회-사회봉사, 3회-특별 교육 이수, 4회-출석 정지, 5회-퇴학 처분	●	●	●	●	●	3
	26	본드, 부탄가스,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학생 ▶ 1회-출석 정지, 2회-퇴학 처분				●	●	3

참고사항

규정

구분	항	내 용	위반 횟수에 따른 징계					누적 (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폭력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퇴폐 행위	27	사행심을 조장하는 물품을 소지한 학생(화투, 카드 등)	●	●				1
	28	사행성 행위에 관련되거나 도박을 한 학생	●	●	●	●	●	3
	29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3
	30	교내·외에서 이성 또는 동성 간에 풍기를 어지럽게 한 학생 (이성의 무릎에 앉는 행위, 포옹, 입맞춤 및 키스,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 유사 성행위, 성행위 등)	●	●	●	●	●	3
집단 행위	31	불량 서클을 조직·운영하거나 가입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3
	32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학생	●	●	●			3
	3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어지럽게 한 학생			●	●	●	3
	34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3
정보 통신	35	게임, 음란, 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	●				1
	36	인터넷에서 불건전한 사이트 운영,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한 학생			●	●	●	3
	37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	●	●	●	3
	38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유출, 촬영하여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3
	39	불량 매체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3
교통 안전	40	학교장의 허락 없이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류 포함)를 운행하여 등·하교하는 학생	●	●				1
기타	41	기타 사안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과 부모의 의사에 의해 퇴학하고자 할 때 '퇴학 처분'으로 의결한 학생					●	3
기준		**1. 동일한 징계를 2회 받은 후 같은 단계의 징계를 받을 시 상위 징계를 부여한다.** **2.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3.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단계를 가감할 수 있다.** 4.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 처분을 내린다. **5. 교내봉사 : 1차-성찰하는 글쓰기 3일, 2차-성찰하는 글쓰기5일+식당청소** **6. 사회봉사 : 지정된 요양병원에서 1차 6시간, 2차 18시간 봉사활동** **7. 특별교육 :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						

▣ 참고 : 학교 폭력에 관한 사안들

- ▸타인에게 전치 2주 이하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타인에게 전치 2주 초과의 상해를 입힌 경우
- ▸2인 이상이 가담한 폭행이나 상해 또는 폭행을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
-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한 경우
- ▸흉기 등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한 경우
- ▸강제추행 및 성폭행을 한 경우
-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협박 및 위력을 과시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감금한 경우
- ▸따돌림에 단순 가담한 경우
- ▸따돌림을 주도한 경우
-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 ▸기타 학폭 관련 사항

▣ 참고 : 학교 생활규정 1항, 2항에 관한 사안들

- ▸변형된 사복, 슬리퍼등 교복 이외의 것을 착용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담당 선생님들의 동의하에 허가증을 발급받는다.
- ▸학생이 선생님의 복장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생님과 학생자치회 임원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대화 한후 결정에 따른다.
- ▸수업권을 방해하는 정도의 정의
  - 교과 담당 교사,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언급, 지적이 있는 경우
  -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 머리 카락의 색이 너무 밝아 시선을 끄는 경우

참고사항

규정	참고사항

■ 원광보건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4. 용의복장 세부규정]

제5조(기본행동·차림새) 2. 차림새 세부규정

① 복장

- 등 · 하교 시 및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규정 교복(교내에서는 명찰을 패용함)을 단정하게 착용한다. 단, 체육 시간 및 허가된 단체 활동과 하복 착용 시에는 생활복 착용이 가능하고 위반 학생을 적발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귀가시킨다.

- 개인 취향에 따라 규정에서 벗어난 교복변형 및 사복 착용은 절대 금지하며 단, 건강상의 이유로 교복 착용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발

- 등 · 하교 시 운동화와 단화(크록스 허용)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끝이 뾰족하거나 굽이 높은 힐, 슬리퍼나 실내화 등의 착용은 안 됨.

③ 화장 및 장신구

- 화장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미용 도구(고대기, 드라이, 뷰러,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반입 금지 사용하다 적발되면 바람직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에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음.

④ 규정 위반 시 처리 방침

-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교육 처분 및 단계적용

■ 원광보건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5. 두발 세부규정]

제5조(기본행동·차림새) 2. 차림새 새부규정

① 길이

- (여학생) 내린 머리가 옷깃 윗선 기준으로 하여 초과 시 머리를 묶어 준다..
- (남학생)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눈썹 위까지이며 뒷머리는 뒤 깃을 덮으면 안 됨.

② 스타일 (남·여 공통)

- 염색, 파마, 펑크, 스크래치, 삭발 등 변형된 형태의 스타일은 금지함.

③ 규정 위반 시 처리 방침

- 학생 선도 규정 부칙에 따라 교육 처분 및 단계적용 (예절 2항)